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Tel 042-481-4085~7 Fax 042-481-4036

홈페이지 www.forest.go.kr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안내

임산물 수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임산물 수출!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촉진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또는 생산단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활기를 찾으세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을 소개합니다!

산림청은 수출활성화사업 및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통해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단체를 활성화 시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은 미래 임산업의 희망입니다.

🎯 지원하는 목적은?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촉진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 지원사업의 종류는?

수출활성화사업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등 7종

해외시장개척사업

해외시장개척활동, 신규 수출상품 개척, 해외홍보 등 4종

🔊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사업절차는?



🔑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지원자격 및 요건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또는 생산단체

🔑 지원되는 임산물 종류는?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
(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중 임산물에 해당하는 품목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수출 활성화사업

보조 사업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임산물 판매촉진 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단기임산물 수출 비용 (포장운송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수출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 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수출품 생산설비 및 운송장비 구입비 지원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수입국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포장재질과 세련된 디자인 개발 지원
수출 촉진 검역 지원	국고보조 100%	미국 수출용 생밤, 유럽 수출용 분재 수출, 현지 검역관 활동비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	국고보조 100%	수출용 분재 표찰 제작비를 지원
수출 이력관리 지원	국고보조 100%	밤 수출이력관리, 잔류농약 검사비 등 지원

융자 사업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출 원자재 구매지원	국고융자 70% (4%, 2년거치 3년 상환)	수출 목제품 생산원자재 구입비 지원

2. 해외시장개척사업

사업명	지원조건 및 지원항목
국제 박람회 참가	- 부스 임차비 (1부스) 100% (기본부스 초과시 업체부담 100%) - 기본 장치비 (진열대, 상담테이블) 100%, - 운송통관 및 냉장비품 임차비 70% (운송통관비는 100만원 이내) - 항공료 50% (업체별 1인), 통역고용 50% (업체별 1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항공료 100% (업체별 1인) - 현지 교통편 및 통역비 100%
종합 판촉전	- 임차료,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 현지 운송통관비 등 판촉·마케팅 활동비 지원 (업체당 13~2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신규 수출상품 개척	- 상품개발 및 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유망품목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해외홍보	- 해외 언론매체 광고 및 전문지 홍보 등 - 사업집행기관에서 임산물 매체광고 및 이벤트 마케팅 전개
한·일 밤 간담회	- 간담회 개최 비용 지원 - 국고보조 100%

☐ 사업의 신청 방법은?

세부 사업별로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 계획 공고

지원사업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집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Tel 02-3434-7182)	an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마케팅팀 (Tel 02-6300-1452)
홈페이지	www.nfcd.or.kr	www.ato.or.kr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세부사업별 집행기관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사업공고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 산림청과 사업집행기관은 필요시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모니터링 실시
- 법령 및 규정 위반시는 관련규정에 의해 관리